

서울특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0. 3.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I .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sup>1)</sup>

-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20년 3월 19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 II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조 846억 6,000만원 보다 0.4%, 391억 9,200만원을 증액한 10조 1,238억 5,2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 A )	기 정 예 산 ( B )	증 감		재 원 구 분	
		금 액 ( C )	증 감 륜 ( C/B )	일 반 재 원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10,123,852	10,084,660	39,192	0.4	25,229	13,963

- **세입예산**은 일반재원 252억 2,900만원과 목적지정재원 139억 6,300만원을 포함한 391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일반재원**의 경우, 보통교부금의 확정교부에 따른 이전수입의 증액분을 반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영하고자 252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목적지정재원(우선확정)**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서울시전입금)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확정분 139억 6,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세출예산**은 5개 세부사업에 391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교육사업비**의 경우, ①학교보건관리 306억 1,100만원, ②유치원 방과후 과정운영 8억 1,000만원, ③방과후학교운영 30억 3,000만원, ④ICT활용교육지원 5억원을 증액하여 총 349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2억 4,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Ⅲ . 세입예산 관련 검토

#### 1.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5조 9,114억 300만원)보다 0.7%, 386억 9,200만원 증액된 5조 9,500억 9,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3-1〉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증 감	증 감 률	재 원 구 분	
					일반재원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합 계	5,950,095	5,911,403	38,692	0.7	25,229	13,4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256,341	5,220,278	36,063	0.7	25,229	10,834
보 통 교 부 금	5,134,560	5,109,331	25,229	0.5	25,229	-
특 별 교 부 금	121,781	110,947	10,834	9.8	-	10,834
국 고 보 조 금	144,440	141,811	2,628	1.9	-	2,628
특별회계전입금	549,314	549,314	-	0.0	-	-

#### (1) 보통교부금에 대한 세입처리

- 보통교부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자원인 바,

- 지난 '20년 2월, 교육부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정산하여 보통교부금을 확정교부함에 따라 당초 기정예산에 반영된 예정교부액(5조 1,093억 3,100만원)보다 0.5%, 252억 2,900만원이 증액된 5조 1,345억 6,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2〉 보통교부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정 예 산	증 감 액 <sup>주1)</sup>	추 경 예 산 안
5,109,331	25,229	5,134,560

※ 주1) 증감액=확정교부액(5,134,560백만원)-예정교부액(5,109,331백만원)

## (2) 특별교부금에 대한 세입처리

○ **특별교부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지역교육현안·재해 대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인 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1,109억 4,700만원) 보다 9.8%, 108억 3,400만원이 증액된 1,217억 8,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교육부가 코로나19 예방대책 사업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두 차례에 걸쳐 교부 통보함에 따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우선확정한 108억 3,400만원을 편성 한 것임

〈표 3-3〉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교부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편 성 내 역	우 선 확 정 액
합		계	10,834
	감염병예방방역물품지원	○ 학교 방역물품 구매 지원 (마스크, 소독제, 의료용장갑, 체온계)	3,794
	제2차 학교방역물품지원	○ 학교 방역물품 구매 지원 44억 1,100만원 ○ 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 26억 2,800만원 <sup>주1)</sup>	7,040

※ 주1)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50:50 매칭 지원

### (3)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처리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 기정예산(1,418억 1,100만원) 보다 1.9%, 26억 2,800만원이 증액된 1,444억 4,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국고보조금은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방역물품지원 사업 중 열화상카메라 설치사업에 대해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50:50의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함에 따른 것으로
  - 동 국고보조금과 지난 3월 6일 교부 통지된 재난안전관리 2차 특별교부금을 세출재원으로 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금번 추경에 26억 2,8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3조 4,584억 7,500만원) 보다 5억원을 증액한 3조 4,589억 7,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비법정전입금을 기정예산(369억 1,100만원) 보다 1.4%, 5억원이 증액된 374억 1,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인 바,

- 지난 '20년 2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치원 및 각급 학교 방역물품 지원금을 교부 통보함에 따라 우선확정한 5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표 3-4〉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증 감	증감률	재 원 구 분	
					일반재원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합 계	3,458,975	3,458,475	500	0.0	-	500
법 정 이 전 수 입	3,421,564	3,421,564	-	0.0	-	-
비 법 정 이 전 수 입	37,411	36,911	500	1.4	-	5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7,411	36,911	500	1.4	-	500
기초자치단체전입금	-	-	-	0.0	-	-

### 3. 기타 검토의견

- '20년 3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1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휴업 장기화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319억 9,3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 교부되는 예산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고 추후 예산이 교부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예산이 교부될 경우, 사업의 취지와 적시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확정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는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국회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동 사업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감안한 한시성 사업이며, 추가 소요예산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한 선제적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IV. 세출예산 관련 검토

### 1. 방역사업 증액

#### □ 학교감염병대책 및 관리사업

- **코로나19감염대책사업**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1)
- **학교감염병관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4)
- **학교감염병관리(서울시전입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8)
- **학교감염병관리(특별교부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50)

○ 동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 및 강화 관련 방역물품, 열화상카메라 등 구매 지원을 위해 **일반재원** 166억 4,800만원과 **목적지정재원** 139억 6,300만원으로써 총 306억 1,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일반재원**의 경우, **방역물품비지원** 112억 2,700만원과 **열화상카메라 구매 지원** 54억 2,100만원으로 총 166억 4,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방역물품비지원**은 서울시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외국인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마스크 구매를 위한 편성내역은 **학교회계전출금**이 아닌 교육청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바, 교육청 일괄구매 추진시 물량확보 및 학교현장에 적기 배포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손소독제, 위생장갑 등 구매를 위한 편성내역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각 학교의 기 보유 방역물품현황 파악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중복지출되는 사례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열화상카메라 구매지원**은 **운영비**로 편성하여 교육청이 일괄구매 후 학생수 600인 미만의 695개 학교를 대상으로 열화상카메라 1대씩을 설치하기 위한 것임

〈표 4-1〉 방역물품 등 구입비 편성현황(일반재원)

(단위 : 백만원, %)

사업내역	추경예산안	가정예산	증 감	증감률	편성내역
합 계	16,648	-	16,648	순증	
방역물품비지원	11,227	-	11,227	순증	· 교육청 구매분 : 100억 8,600만원 (학생 1인당 마스크 7매) · 학교 구매분 : 11억 4,100만원 (학급당 27,000원, 손소독제 등)
열화상카메라 구매지원	5,421	-	5,421	순증	· 학교당 1대 780만원, 695개교

○ **목적지정재원**의 경우, 총 139억 6,3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학교현장에 지원이 완료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바,

- **방역물품비지원**(87억 600만원)은 서울시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외국인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소독제, 위생장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 **열화상카메라 구매지원**(52억 5,700만원)은 학생수 600인 이상의 662개 학교를 대상으로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위한 것임

〈표 4-2〉 방역물품 등 구입비 편성현황(목적지정재원)

(단위 : 백만원)

재원	사업내역	우선확정액	편성내역
합	계	13,963	
특별교부금	감염병예방방역물품지원	3,795	· 학교 구매분 : 마스크 및 소독제 등
특별교부금	제2차 학교방역물품지원	4,411	· 교육청 구매분 : 마스크 구입 30억원, 체온계 구입 14억 1,100만원
특별교부금	제2차 학교방역물품지원	2,628	· 열화상카메라 674대 (50:50매칭)
국고보조금	학교열화상카메라 설치사업	2,628	
서울시전입금	방역물품비지원	500	· 교육청 구매분 : 마스크 등 방역물품

○ 그러나 서울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됨에 따라 학교운영비 지출소요가 평년 대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배정된 학교기본운영비 등 학교회계 가용재원으로 코로나19에 선 대응하고 추후 학교회계 재원부족을 보충하는 재원배분 방식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 긴급돌봄지원사업 증액

### □ 에듀케어운영확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7)

○ 동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돌봄을 운영하는 공·사립유치원 791개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8억 1,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3월 9일 기준 긴급 돌봄을 신청한 유아 15,034명중 9,000명분 15일치 급식비 및 간식비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 공·사립유치원 긴급 돌봄 운영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내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편성내역
합	계	4,176	3,366	810	24.0	· 6,000원×15일×9,000명
	공립에듀케어신증설	2,724	2,562	162	6.3	· 6,000원×15일×1,800명
	사립유치원에듀케어 운영지원	1,452	804	648	80.6	· 6,000원×15일×7,200명

- 신청 유아수 대비 긴급 돌봄에 실제 참여하는 유아수에 유동성을 배제할 수 없고, 참여율에 따라 예산집행률에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발생할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바,
  - 추경을 통해 편성되는 긴급 돌봄운영비는 급식비 및 간식비 지원을 위한 목적사업비라는 점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운영비성 경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4〉 공·사립유치원 긴급 돌봄 운영현황

(단위 : 개교, 명, %)

구	분	전체 유치원 수(A)	운영유치원			신청유아	
			유치원 수(B)	운영률(B/A)	현원(C)	유아수(D)	신청률(D/C)
합	계	791	784	99.1	75,690	15,034	19.9
	공립단설	41	41	100.0	4,992	742	14.9
	공립병설	213	213	100.0	12,345	2,056	16.7
	사립	537	530	98.7	58,353	12,236	21.0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2370 ('20. 3. 9) "(서울)휴업 연기에 따른 유치원 긴급돌봄 3차 수요조사 결과"

〈표 4-5〉 공·사립유치원 긴급 돌봄 참여현황

(단위 : 명, %)

신청인원(A)	실제 참여인원(B)	참여율(B/A)
15,811	11,259	71.2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관련 일일 브리핑」 ('20. 3.16 17시 기준)

□ **초등돌봄교실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3)

○ 동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돌봄을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 554교에 운영비 지원을 위해 30억 3,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운영비 세부내역은 1실당 15일분 인건비 150만원과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구입비 50만원으로 산출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 요청된 사업임에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운영비**로만 기재되어 있어 예산서와 설명자료가 불일치하고 있는 바, 설명자료 작성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6〉 공립초등학교 긴급 돌봄 운영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내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편성내역
초등돌봄교실운영	74,898	71,868	3,030	4.2	· 2,000,000원×1,515실

**3. 예비비 증액**

□ **예비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5)

○ **예비비**는 기정예산(100억원) 보다 42억 4,100만원 증액된 142억 4,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예비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으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교육청은 '20년도 기정예산에 **일반예비비** 60억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억원을 반영하여 총 1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예산(40억원)보다 42억 4,100만원 증액한 82억 4,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7〉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비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예	비	합	계	14,241	10,000	4,241	42.4				
	일	반	예	비	비	6,000	6,000	0	0		
	재	해·재	난	목적	예	비	비	8,241	4,000	4,241	106.0

○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금년도 1분기가 종료되지 않은 3월 18일 기준,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집행액이 38억 3,600만원으로 '20년도 기정예산(40억원)의 95.9%가 이미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향후에도 발생 가능한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지원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금번 추경안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증액 편성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8〉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지 원 내 역	지 원 대 상	지 원 액
합	계	3,836
감염병 예방 방역 물품 지원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	634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및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개선	교육연구정보원	505
유치원 방역 소독	공·사립 유치원	84
코로나19 긴급 대응 의료인력 지원	신규임용보건교사학교, 유치원	320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 방역소독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	1,301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교육자료 제작	체육건강문화예술과	14
유치원 긴급돌봄 급간식 운영비	공·사립 유치원	445
학교 체육관 및 수영장 방역소독비	각 급 학교	533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재해·재난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피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년도부터 **일반 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으나

- 관련 법률에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수준의 예비비 확보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인 예비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규모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토록 하는 등 불확실한 예비비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V.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관련

- **성인지 예산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첨부되어야 하고, **성과 계획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관련 법률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를 생략한 것으로 사료됨